

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정성호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7280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. 6. 8.

발의자 : 정성호 · 한정애 · 서영교

유동수 · 양승조 · 김병욱

박남춘 · 최인호 · 윤관석

박용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「형법」 제347조(사기), 제350조(공갈), 제350조의2(특수공갈)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법정 이득액 구간에 따라 가중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. 그러나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등의 입력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의 경우에는 그 가중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사기죄와 같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따라 「형법」 제347조의2의 컴퓨터등 사용사기죄를 특정재산 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으로 추가하려는 것임(안 제3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350조(공갈)”를 “제347조의2(컴퓨터등 사용사기), 제350조(공갈)”로, “제350조 및”을 “제347조의2, 제350조 및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